

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(문희성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777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1. 6. 25.

발 의 자 : 문희성, 김지근, 노세영
강혜경, 박경흠, 김기환
신성봉, 권태호, 이명녀
안영호, 박채연

1. 제안이유

- 민원인의 성희롱·성추행·성폭력, 폭언·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정신적·신체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, 적용범위, 다른 조례와의 관계 (안 제1조~안 제4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,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, 지원사항, 지원기준 지원방법 (안 제5조~제9조)
- 다. 지원신청, 지원결정, 시행규칙 (안 제10조~제12조)

3. 근거법규

- 가.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
- 나.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4조(담당자의 보호)

4. 제정조례안 : “따로 붙임”

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민원인의 성희롱·성추행·성폭력, 폭언·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정신적·신체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·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구청장의 책무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“구청장이라 한다”)은 민원인의 성희롱·성추행·성폭행, 폭언·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6조(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)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시설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, 폭행 등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원사항)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성희롱·성추행·성폭력 및 폭언·폭행 등으로 정신적·신체적

4 (제237회-행정자치위제2차부록)

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원 할 수 있다.

1. 심리상담 및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·연수
2. 의료비
3.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
4. 사건과 관련된 법률상담 연계
5. 공무상 재해 등 인정을 위한 행정 지원
6.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

제8조(지원기준)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9조(지원방법)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.

③ 구청장은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, 전문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지원신청)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피해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자체적인 조사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

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지원결정)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제7조 각 호의 지원 또는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지원 기준(제6조, 제7조 관련)

| 지원구분 | 근 거 | 지원한도 | 세부기준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| 제6조 | 예산의 범위 내 | 필요시 영상장비 구비 및 사전촬영 안내 협조 |
| 심리상담 | 제7조제1호 | 7만원 | 2회 |
| 교육·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| 제7조제1호 | 예산의 범위 내 | |
| 의료비 | 제7조제2호 | 20만원 이내 | 병원진료비, 약제비 등 본인 부담분 기준 (최초 1회한) |
|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| 제7조제3호 | 1시간 | 심적 고충이 클 경우 1시간 연장 |
| 법률상담 | 제7조제4호 | 상담 연계 | |
| 그 밖의 지원 | 제7조제6호 | 예산의 범위 내 | |

[별지 서식]

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(제10조 관련)

| | | |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발 생 일 | | 부 서 명 | |
| 피해 공무원 | ○ 직급(위): ○ 성 명: | 연 락 처 | |
| 민원 내용 (핵심사항 위주) | ○ ○ ○ | | |
| 공무원 피해내용 (구체적 작성) | ○ ○ ○ | | |
| 지원 신청 내용 | 심리상담() 법률상담() 의료비() 휴식시간() | | |
| | 은행명 | (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) | 계좌번호 (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) |
| ※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·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| |
| 증빙 자료 (의료비 지원의 경우) | ○ 진단서 ○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○ 피해를 입증할 자료 | | |

「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.

20

신청인 : 성명 (서명 또는 인)

부서장 :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중